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45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주차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 변경 및 이용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 나.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안 제18조제4항)
 - [별표 10]의 제목, 주차구획선 색상 및 마크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gimyoun17@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제2호 중 “접근성,”을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여성우선주차장”을 각각 “배려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분홍색”을 “보라색”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18조제4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확장형(가로 2.6m 이상 × 세로 5.2m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
- 마크 규격: 가로 140cm × 세로 100cm
2. 색채
마크의 색은 보라색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보라색으로 표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p> <p><신 설></p> <p>② <u>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u></p>	<p>제18조(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u>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u></p> <p>② <u>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u>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u> <p>③ <u>배려주차장</u>-----</p> <p>-----</p>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하여 별표 10과 같이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0]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18조제3항 관련)



·비고·

1. 주차구획선은 확장형(가로 2.6m 이상 × 세로 5.2m 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 마크 규격: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재
마크의 색은 분홍색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

④ 배려주차장 -----
----- 보라색 -----

-----.

[별표 10]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18조제4항 관련)



·비고·

1. 주차구획선은 확장형(가로 2.6m 이상 × 세로 5.2m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
- 마크 규격: 가로 140cm × 세로 100cm
2. 색재
마크의 색은 보라색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보라색으로 표기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법 규 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